

정 부 합 동 감 사 결 과

시 정 요 구

제 목 환경분야 법정계획 미수립

기 관 명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내 용

1. 습지보전실천계획 미수립(광주광역시 ○○○○과)

「습지보전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습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습지보전기초계획을 각각 수립하여야 하며, 환경부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초계획을 토대로 습지보전에 관한 시책 방향, 습지조사에 관한 사항,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습지보전기초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환경정책과에서는 「습지보전법」 제5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의 습지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05. 3. 31. 같은 법 시행일부터 2017. 9. 29. 정부합

동감사일 현재까지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관할 구역의 습지보전 업무를 추진하였다.(현재 연구개발사업 용역 중, 2016. 5. ~ 2017. 12.)

2.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 미수립(광주광역시 ○○○○○○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소관 분야별 또는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등 재활용 여건 등이 포함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기후변화대응과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6년부터 2017. 9. 29.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도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업무를 추진하였다.(2015년 이전 시행계획은 수립)

3.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미수립(광주광역시 ○○○○○○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장관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기 위한 처리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생산과 수급에 관한 정보관리 등이 포함된 재활용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전년도 건설폐기물의 발생·처리 및 재활용 현황, 전년도 순환골재,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순환진흙 및 순환토사의 생산과 공급 실적,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당해 연도 세부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과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에서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환경부장관에게 통보도 하지 않고 관할 구역의 건설폐기물 재활용 업무를 추진하였다.

4.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미수립(동구, 남구, 광산구)

「폐기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10년마다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려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인구, 주거 형태, 산업 구조·분포 및 지리적 환경 등에 관한 개황,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량과 장래의 발생 예상량, 폐기물의 처리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동구, 남구, 광산구는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세워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들에서는 2007. 4. 11. 같은 법 시행일부터 2017. 9. 29. 정부합동감사일 현재까지도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본계획을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지도 않고 관할 구역의 폐기물처리 업무를 추진하였다.

5. 자원순환 집행계획 미수립(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협의회와 협의하여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방침 및 추진목표, 폐기물의 발생·재활용 및 재활용산업 현황 등 자원순환 여건에 관한 사항, 자원순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명시된 기관별 추진사항에 관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소관 분야별 또는 관할 구역의 전년도 폐기물 발생·처리 현황 등 재활용 여건 등이 포함된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해당 연도의 자원순환 세부추진계획, 전년도 자원순환 추진 실적 및 분석,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의 조달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2월 말일까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관서들에서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년간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관할 구역의 자원순환 업무를 추진하였다.(2015년 이전은 집행계획 수립)

조치할 사항 광주광역시장은

[시정] 「습지보전법」에 따라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알리고 이를 시행하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하며,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남구청장, 광산구청장은

[시정]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청장, 서구청장, 남구청장, 북구청장, 광산구청장은

[시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시행하고, 앞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